

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]

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(제13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.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라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, 지정취소인 경우(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.

1) 감경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) 가중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8조 제2항제1호	지정 취소			
나.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지정목적에 벗어나는 경우	법 제18조 제2항제2호	시정 명령	지정 취소		
다.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	법 제18조 제2항제3호	시정 명령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3개월	
라.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18조 제2항제4호	시정 명령	업무 정지 3개월	지정 취소	
마. 해양수산부장관의 정당한 업무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	법 제18조 제2항제5호	시정 명령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3개월	지정 취소